

전기사업법령의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전기사업법 유권해석 사례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유권해석 사례집의 내용은 전기사업법과 관련한 개별질의에 대하여 한 유권해석으로써 동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개정과 공익의 변천 등으로 인하여 현행 법령의 취지와 다를수 있으며, 다른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민원봉사실 02-888-4623]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기

전기안전관리자를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개시전이라 하면 전기송전 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인지

Question

Answer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기는 전기설비의 ①사용전검사신청전 또는 ②사업개시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① : 공사계획수립 ▶ 공사착공 ▶ 사용전검사신청전(전기안전관리자 선임)→사용전검사 적합→전기사용 신청
 - ② : 휴지 또는 폐지설비 →사업개시전(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전기사용신청
 - ◎ “사업개시전”이라 함은 전기설비 사용 중에 일시적으로 휴지 또는 폐지된 설비를 다시 사용할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 참고로 전기사업법시행규칙개정(01.04.07)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전기설비 공사계획 수립으로 보면)하고 공사착공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규칙 개정에 따라 사용전검사신청전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용전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은 후에 전기송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민원질의 2004. 12. 15)

2. 전기안전관리자 분야별 선임기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기계·토목분야 자격취득자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선임하여야 하는지

Question

Answer

- ◎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하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동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라 함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전기분야, 기계분야 및 토목분야로 나누고 그 각 분야별로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 예를 들어, 전기설비와 기계설비가 있는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와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기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전기분야 및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각각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별표12)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전기·기계·토목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송·변·배전 및 수용설비의 경우에는 전기 분야의 전기안전관리자만 선임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민원질의 2005. 8. 4)



3. 시공사가 점유자가 될 수 있는지

- 건축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가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시공사가 시설물관리업자와 전기안전관리 계약을 할 수 있는지
- 시공사를 점유자로 볼 수 없다면 건축주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및 건축주가 시설물관리업체와 안전관리도급계약을 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Question

Answer

- ◎ 건축주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는 점유자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시설물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도 없습니다.
 -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기는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이므로,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으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각호의 자(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할 수 있으나,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는 다른 용역업체에 재 위탁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민원질의 2003. 7)

4. 전기안전관리자 격일근무를 상시근무로 볼 수 있는지

전기안전관리자가 격일 근무하는 경우,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상시근무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지, 아니면 전기안전관리자가 근무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Question

Answer

-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상시근무의 의미는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일 8시간, 월 25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사업장의 형태 및 성격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격일 근무 또는 교대근무인 경우에도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이 경우 안전관리자 공백시 안전관리업무를 대리하기 위한 대리인의 지정, 대리자의 직무범위 등을 정하여 안전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3조 각 항에 따라 지정요건이 완화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민원질의 2004. 7)



5. 안전관리자가 동일현장에서 LPG안전 관리자로 겸직 가능한지

주택관리업체 직원이 위탁받은 아파트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동일한 아파트에 LPG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Question

Answer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그 전기설비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므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의 겸직이 불가합니다.

○ 참고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에는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3. 9)

6. 전기안전관리자가 소속회사에서 겸업이 허용되는 범위는

- 제조업체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채용된 자가 동일회사에서 근무할 경우에 허용되는 겸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예를 들어 소방관리자, 조리사자격증으로 식당허가,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Question

Answer

○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는 없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등에 적용되는 겸직허용, 고용의무 완화, 2종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 완화 등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동 조치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리사 자격 등은 겸직허용, 고용완화 등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동 조치법』에서 허용하는 겸직 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4. 12. 26)